

경기도공고 제 2020-627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도갑선 등 2,066명(법인, 대표자 및 개인)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과 같음

서류의 명칭 :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서류의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지방세 채납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귀하가 채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기한내에 채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명기한내에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서류를 2020년 3월 2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20 년 3 월 20 일

경 기 도 지 사 인



문의처 : 경기도 조세정의과(031-8008-2471) 및 각 시·군 세무(세정, 징수)부서